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943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2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년 2월 28일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60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5월 30일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85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23년 4월 3일과 2023년 6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인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을 정의규정에서 다자녀 가족의 막내 나이를 18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신설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3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

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다만, 막내가 <u>13세</u>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p> <p>5. ~ 8. (생략)</p>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u>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u></p> <p>2. <u>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u></p> <p>3. <u>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u></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18세</u> ----- -----.</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p> <p>① ----- ----- -----.</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 <u>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난자동결 시술 비용</u></p>

현행	개정안
<신설>	<p>2. 정·난관 복원 시술비</p> <p>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신설>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신설>	<p>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신설>	<p>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